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133

발의연월일: 2025. 2. 13.

발 의 자:이정문・이훈기・이재관

박 정・김남근・한민수

이인영 • 문금주 • 문진석

이상식 • 복기왕 • 이연희

김영배 · 김원이 · 김동아

의원(15인)

제안이유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법률은 현충시설과 관련해 지정·관리·건립 등에 관한 포괄적인 근거만을 두고 있어 현충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충시설의 건립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현충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현충시설의 건립과 현충시설 또는 현충유적지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 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현충시설 건립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현충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다. 국가보훈부장관의 현충시설 및 현충유적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 라. 국외 현충시설을 건립하거나 개·보수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외교부장관에게 외국정부 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 마. 현충시설을 손상하거나 훼손한 자에 대한 벌칙을 정함(안 제22조).

법률 제 호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현충시설(顯忠施設)의 체계적인 건립·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현충시설"이란 조국의 독립과 국가의 수호, 국민의 생명·재산보호 및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하고 선양하기 위한 시설과 장소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제9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시설등을 말한다.
- 2. "독립운동시설"이란 독립운동에 관한 사실을 기리거나 「독립유 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이하 "독립유공자"라 한다)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기 위한 현충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등을 말한다.
 - 가. 독립운동에 관한 사실 또는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 기 위한 기념관·전시관·조형물·상징물·공원·기념비·추모 비와 그 밖의 비석 및 탑
 - 나. 독립유공자의 사당(祠堂)・생가(生家) 및 그 부속 건물

- 다. 독립운동을 한 장소
- 라.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현충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등
- 3. "국가수호시설"이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국가수호에 관한 사실을 기리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이하 "국가수호유공자"라 한다)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엔참전용사(이하 "유엔참전용사"라 한다)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기 위한 현충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등을 말한다.
 - 가. 국가수호활동에 관한 사실 또는 국가수호유공자와 유엔참전용 사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전시관·조형물·상 징물·공원·기념비·전공비·추모비·현충탑·위령탑과 그 밖 의 비석 및 탑
 - 나. 국가수호유공자의 사당·생가 및 부속 건물
 - 다. 국가수호활동을 한 장소
 - 라.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수호유공자의 호국정신(護國精神)을 계승하거나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현 충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등
- 4. "민주화운동시설"이란 3·15의거,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이하 "민주화운동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실을 기리거나 「국가유공

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이하 "민주유공자"라 한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한 현충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등을 말한다.

- 가. 민주화운동등에 관한 사실 또는 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전시관·조형물·상징물·공원·기념비· 추모비와 그 밖의 비석과 탑
- 나. 민주유공자의 사당·생가 및 그 부속 건물
- 다. 민주화운동등을 한 장소
- 라.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민주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현충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등
- 5. "기타 현충시설"이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8호,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이하 "기타 국가유 공자"라 한다)의 희생과 공훈 및 그들과 관련된 사실을 기리기 위한 현충시설을 말한다.
- 6. "현충유적지"란 현충시설 중 역사적·교육적으로 보존·관리할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인정하는 시설등으로서 제10조에 따라 국가 보훈부장관이 지정한 시설등을 말한다.
- 7. "관리자"란 현충시설을 관리하여 시설의 훼손 멸실 등을 방지하

- 는 사람으로 제12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현충시설의 건립 및 관리의 기본원칙) ① 현충시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립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 1. 지역적 특색
 - 2. 역사적 사건의 중요성과 상징성
 - 3. 독립유공자, 국가수호유공자, 민주유공자 및 기타 국가유공자 간 의 형평성
 - ② 현충시설은 그 원형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보존・관리 및 활용하여야 한다.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현충시설의 건립·지정·보존·관리 및 활용(이하 "건립등"이라 한다)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 진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현충시설의 건립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현충시설의 건립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의 건립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현충시설의 건립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현충시설 건립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 2. 직전 5년간의 현충시설 건립등에 대한 평가
- 3. 현충시설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4. 현충시설의 관리자 지정 · 운영에 관한 사항
- 5. 현충시설의 안내해설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6. 현충시설의 건립등에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 7. 현충시설의 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현충시설의 건립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7조에 따른 현충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 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 또는 관련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현충시설심의위원회) ① 현충시설의 건립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 소속으로 현충시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현충시설의 건립에 관한 사항
- 3. 현충시설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 4. 현충시설의 건립등에 관한 업무의 협력 · 조정에 관한 사항
- 5. 현충시설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6. 현충유적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현충시설의 건립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 2. 역사, 건축, 조형물, 외교, 교육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국가보훈부의 고위공

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현충시설의 지정)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유공자, 국가수호유 공자, 민주유공자 및 기타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조형물·사적지(史蹟地), 또는 독립유공자, 국 가수호유공자, 민주유공자 및 기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있 었던 일정한 장소 등으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현충시 설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등을 현충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그 시설등에 대하여 현충시설로 지정하여 줄 것을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시설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 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현충시설의 지정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1. 독립유공자, 국가수호유공자, 민주유공자 또는 기타 국가유공자와 의 관련성
 - 2. 독립운동, 국가수호활동 또는 민주화운동등과의 관련성
 - 3. 시설등의 보존상태

- 4. 시설등의 활용실태 및 향후 활용가능성
- 5. 현충시설 지정 이후 관리계획
- ④ 그 밖에 현충시설의 지정 및 지정 요청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현충유적지의 지정 및 보존·관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 시설 중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등으로서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호의 필요성이 상당한 시설등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현충유적지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충유적지의 멸실·훼손 등을 방지하고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현충유적지의 보존·관리 및 활성화를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현충시설의 지정해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 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1. 「상훈법」 제8조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과 관련한 시설등
 -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또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과관련한 시설등
 - 3.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 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하

- 여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조사보고서에 포함된 사람과 관련한 시설등
- 4.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훼손된 시설등으로서 원형 복원이 곤란 한 시설등
- 5. 동일 목적으로 새로 건립하거나 동일 지역의 유사한 현충시설을 통합하여 새로 지정된 현충시설의 부대시설로 지정하고자 하려는 시설등
- 6. 그 밖에 현충시설로서의 가치가 없어지거나 현충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등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해당 현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현충시설의 관리자는 해제가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현충시설(기타 부대시 설을 포함한다)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현충시설 지정의 해제, 철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관리자의 지정)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현충시설을 지정할 때 관리자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 ② 관리자는 그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시설의 훼손·멸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지정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현충시설의 관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훼손·방치 등으로 관리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현충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자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수·보수 등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이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누구든지 현충시설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철거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훼손되거나 도로·항만건설,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철거 또는 이전 설치를 할 수 있다.
 -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현충시설을 철거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현충시설의 이전 및 안내표석의 설치 등 보존 방안을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4조(현충시설의 실태조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현충시설의 보존 및 관리실태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15조(현충시설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충시설의 체계

- 적인 활용을 위하여 현충시설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현충시설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및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안내해설사 양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의 역사적 의미, 연혁, 관련 인물 등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안내해설사를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해설사의 양성,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17조(현충시설의 건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성·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직접 현충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현충시설을 건립하려는 자는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가 보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절차,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국외 현충시설의 건립 및 보존·관리) ① 국외에 현충시설을 건립하거나 국외에 있는 현충시설을 개·보수하려는 자는 그 지역 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 현충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 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외 현충시설을 조사하고 이를 보존·관리하

- 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외 현충시설의 건립, 조사 및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교부장관에게 외국정부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국외에 현충시설을 건립하거나 국외에 있는 현충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현충시설 정보화의 촉진)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이 현충시설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현충시설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충시설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현충시설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예산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현충시설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비용. 다만,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거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 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현충시 설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 2. 제15조에 따른 현충시설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그 사업에 드는 비용
- 4.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그 현충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에 드는 비용
- 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제 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2조(벌칙) ①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현충시설을 철거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현충시설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현충시설 관리자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
- 2.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현충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게 한 관리자
- ④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녀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 규정된 형의 2 분의 1까지를 가중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3조(과태료)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현충시설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 또는 해제된 현충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 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의2(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를 삭제한다.